

-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 -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5. 6. 27. ----- 최광렬의원의 5인
- 나. 회 부 일 자 : 2005. 6. 27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2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05.7.20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쌍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알팔하여 개정하는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제명 띄어쓰기(안 제2조 별표1)
- 본문중 법령 및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경우 “ 「 ”표기와 기타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3조 별표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 규칙 제정 규칙안은 법제처의 “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안내”에 의거 개별 자치법규 개정 때마다 알팔이 띄어쓰기 및 법령 등 인용문의 낫표 표시사항을 개정안 말마에 부기도록 한사항을 개선하여 우리구의회 규칙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와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알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 하려는 것이며, 우리구의회 각종 자치법규는 2005.6.22 공포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에 의거 개정된 바 있으므로, 원안과 같이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